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(내와동산 운영규정 내 제2호 2장'운영'에 근거함)

계약대상자 및 입소정원

- **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**로 수급자(또는 보호자)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제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노인요양시설인 내와동산의 입소정원은 **46인**으로 한다.

모집 방법

-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계약 기간

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**장기요양인정기간을 기준**으로 하며 등급 갱신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재계약을 시행한다.

계약 목적

계약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,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소어르신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갑,을간 공동 노력의 의지를 확립하기 위함이다.

이용료 및 비용 변경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.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**등급이 변경**되었을 경우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**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**되었을 경우
3.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**재계약**을 하여야 하는 경우

(단위:원)

구분		본인부담금 (30일 이용기준)				
		인상금액 (일반20%기준)	일반(20%)		경감(12%)	경감(8%)
			2024년 수가	2025년 수가	2025.1.1	2025.1.1
본인 부담금	1등급	+37,260	505,440	542,700	325,620	217,080
	2등급	+34,560	468,900	503,460	302,076	201,384
	3~5등급	+32,640	442,800	475,440	285,264	190,176
비급여	식재료비 (간식포함)	-	(1식 2,500원+간식비 1,000원) X 30일 = 255,000원 (1일 : 아침·점심·저녁/간식2회)			
합계	1등급	+37,260	760,440	797,700	580,620	472,080
	2등급	+34,560	723,900	758,460	557,076	456,384
	3~5등급	+32,640	697,800	730,440	540,264	445,176

서비스 제공자의 의무

1. “을”의 **안전한 시설** 생활 여건 조성 및 **질 높은 서비스제공** 의무
   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2. “을”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**즉시 연락** 의무
   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3. **표준 수발서비스**의 성실한 제공 의무

입소자의 의무

1. 월 이용료 납부 의무
2.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
3.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4.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5.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보호자의 의무

1. 입소자에 관한 **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**과 의무
2.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**입소비용 부담**의무
3.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5.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.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

보호자의 의무 및 권리

1. 계약해지요청의 권리
2. 입소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내용 확인의 권리
3. 급여제공계획에 참여하거나 별도의 내용을 요청할 권리
4. 기타 통상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주장할 권리

계약의 해제

1.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2.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3.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4.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5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6.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.
7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

1.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   가.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  나.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2.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   가.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
   나.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   다.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   라.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